

독일판례 1

정정보도문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사후적 변경

Dusseldorf 고등법원 1984. 11. 28 판결-15U199/84 사건-

<적용법조>

노르드하이-베스트팔렌주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4 문 및 제 5 문

<판결요지>

언론법 제 11 조 정정보도문의 전체적인 의미와 그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언어상으로 보아 분리 될 수 있는) 부분의 삭제는 그 피해자 본인에 의해서만, 그리고 위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4 문 및 제 5 문에 규정된 형식 및 기간 내에 있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사실개요>

신청인은 유행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점에서는 1979 년 이래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되는 개인 인적사항 처리시스템(PEP)이라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은 주간지인 「노동세계」라는 신문의 책임편집인이다. 위 신문의 1984년 5월 17일자신문에는 『PEP는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의 전자기억장치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의 지배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위와 동일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구두변론에 있어서는 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권고에 의하여 정정보도문을 스스로 변경하였다.

즉 신청인은 위 「노동세계」라는 신문의 아직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신문에 원문기사와 동일한 활자로 다음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신청하였다.

제목: 1984년 5월 17일자 『PEP는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 위 기사에 나타난 「위 F 유행품 취급 상점의 105 종업원에 대하여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추적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 종업원들은 앞서 말한 개인 인적사항 처리컴퓨터에 의하여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이나 또는 자유시간에 전혀 감시 받지 않고 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인용된 「그들은 집의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Call Girl 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Stuttgart 의 HBV 지배인의 이야기는 옳지 않다. 여자종업원들은, 집의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Call Girl 과 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종업원들이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의 시간은 급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오히려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 중 화장실 등에 가기 위한 15 분간의 시간에도 급료가 지급되는데, 종업원들이 그 15 분을 화장실에 가는데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급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 F 유행품 상점 지배인-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위 신청의 변경이 첫째, 너무 늦게 행해졌고, 둘째, 전문기사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셋째, 가치판단이 포함되어있어 불법하고, 넷째, 정정보도문이 너무 길게 작성되어 있다고 항변하였다.

당원에 의하여 파기된, 제 1 심판결은 위 변경된 신청(다만 「제목」, 「내용」이라는 단어는 생략한 채로)을 허가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위 주의 언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정정보도문 게재의 청구는, 정정보도문은 일정한 서면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는 위 주의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4 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신청이 없다. 신청인의 지배인이 1984 년 6 월 8 일자 원래의 정정보도문에는 적법하게 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정정보도문은 원래의 그것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적어도 2 가지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게재되어야 할 정정보도문을 변경함에는,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인 측면(이 점을 지방법원은 간과하였다)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련해서 당원은, 순수하게 문법상이나 표현상의 실수인 경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문의 문안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전체로서의 정정보도문의 변경에 해당되어 따라서 새로운 문안은 위 주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4 문 및 제 5 문에 따른 형식 및 기간 내에 새로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자에게 그 게재를 요청해야만 하는지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함부르크 고등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그러하다. 최근 판례는 AfP 1981, 408/109 참조). 왜냐하면 반대의 견해에 의할지라도, 원래의 문안과 비교하여도 정정보도문의 변경이 단지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정정보도문의 삭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정정보도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변경은 그 청구권자 본인에게

말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Seitz/Schmidt/Schoner, Der C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Rdnr. 414; Loffle Presserecht, 3 Aufl., Bd. 1, § 11LPG Rdnr. 209f.f., 특히 211f;Wenzel,AfP1982,89/91).

정정보도문의 변경에 의해서 단지 그 내용의 축소 이외의 다른 효과가 발생 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결정 만으로서는 족하지 아니한 것이다.(함부르크 고등법원 AfP1984, 155/156f.) 그리고 단순한 문안의 삭제인 경우에도 그 삭제로 말미암아 정정보도문 전체의 의미를 내용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 개의 외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논점이 서로 일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 중의 하나를 삭제하게 되면 다른 논점의 의미와 취지를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주 언론법 제 11 조 제 2 항 제 4 문 및 제 5 문의 형식에 의해서만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AfP1982,179/180f;당원 1979, 10, 17 판결 -I5U93/79 사건- 및 1981. 10. 14 판결 -15U I13/81 사건-, 쾰른 지방법원, AfP1976, 191/192). 본건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의 제 2 항 중 4 번째 문장을 삭제하는 것은 단순한 삭제의 범위를 넘어서 정정보도문의 내용상의 변경을 야기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위 문장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원문기사에 대한 단순한 반박을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청인 개인의 인적사항 관리시스템의 장점들을 내세우려 한 것이었다면, 이는 신청인이 사회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내려 한 것 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모두 삭제된 위 정정보도문의 제 4 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취지는 바로 앞에서 본 바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순수한 가치판단에 관한 점에서 볼 때 위법한 마지막의 2 개의 문장은 원문기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융통성 있는 노동시간에 대한 찬양과 이에 대한 종업원들의 이해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문기사가 종업원들이 위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인상에 대한 정정보도」 라는 것이 신청인을 위하여 고려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당원은 이점에 관하여 명백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신청인에 의한 순수하게 주관적인 「성과압박」의 평가에 반대하여 신청인에 의한 마찬가지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과과락」을 내세우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 두 가지의 특징적인, 원래의 정정보도문에 내포되어 있는 결함은 이를 단순히 삭제함으로써만 제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삭제하게 되면 그 새로운 정정보도문은, 약화되고 전혀 성질이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정정보도문은 피신청인의 비난을 배척함에 그치게 되고 따라서 신청인의 적극적인 자기주장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내용적인 변경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후에 삭제되게 된 부분이 처음부터 분명히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본래부터 명백한 것이다. 특히 원문기사의 수 개의 부분들이 서로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 중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문에 언급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외부의 독자에게 주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본 2 개의 기사내용은 각각 따로 고찰하면 별개의 독자적인 사실상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들은 원문기사의 취지에 반대하여 신청인이 반사회적인 기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의 한 가지가 삭제되게 되면 그 전체적인 의미가 바뀌어 지게 되는 것이다. 즉 독자들은 나머지 주장들을 신청인이 진실한 것으로서 승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신청인 자신의 이익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는 신청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